

新海洋法の 問題点

楊 世 植*

目 次

序 言

I. 公海의 自由 및 그 制約

II. 沿岸國 管轄權의 擴大

III. 經濟水域의 法的 문제점

IV. 結 論

序 言

새로운 國際海洋秩序의 定立을 위하여 1973年 12月 2日 第1會期를 New York에서 開催한 第3次 UN海洋法會議는 그 뒤 1974年 6月~8월에 Venezuela의 首都 Caracas에서 第2會期, 1975年 3月~5月 에 Geneva에서 第3會期, 1976年 3月~5월에 New York에서 第4會期, 1976年 8月~9월에 New York에서 第5會期, 1977年 5月~7월에 역시 New York에서 第6會期를 가졌고 現在 1978年 3月부터 7~8週間豫定으로 第7會期를 가지고 있는 中이나 近4年間에 걸친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全般的인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具體的 成果가 成文法典으로 確定되지 않았음에도 이 會議과정에서 表明된 各國의 基本적 立場은 이미 領海 12海里, 經濟水域 200海里가 世界의 大勢임을 보여주었고 이제 論議의 焦點은 經濟水域制度 自体의 妥當性의 問題가 아니고 그 內容, 例컨대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 沿岸國의 權限의 範圍, 內陸國, 地理的 不利國의 取扱 등의 問題로 옮겨가고 있으며 深海海底의 開發에 있어서도 그 資源開發의 具體的 方式의 問題로 좁혀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第3次 海洋法會議의 妥結을 기다리지 않고 一方의인 國內立法으로서 200海里 經濟水域 等の 設定을 斷行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에 반대하여온 先進海洋國이었다는 점은 하나의 irony 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그것이 지닌 決定的인 先導的 意味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976年 4月 13日에 制定公布하여 1977年 3月 1日을 期하여 施行한 美國의 「1976年 漁業保存 管理法」은 —그것은 國內法으로 200海里의 漁業專管水域을 設定하는 것이었다—美國이 享有하고 있는 國際力學上的 莫強한 地位로 因하여 衝擊波를 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78年 1月現在 距岸 200

* 釜山水産大學 教授

海里에 어떠한 형태의 管轄權을 宣布한 나라는 127沿岸國 中에서 半에 가까운 57個國에 達하며 기타 國家도 早晚間 그 뒤를 따를 것으로 豫測된다.

이와같이 激動하는 國際海洋制度 속에서 우리 나라는 美國과 1977年 1月 4일에 워싱턴에서 漁業協定을 체결하여 美國의 漁業水域 200海里를 認定한 것을 위시하여 各國의 200海里 宣布에 대한 對策에 腐心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 自身도 12海里 領海法을 1977年 12月 31일에 公布하고 1978年 4月 30日 零時를 期하여 實施함으로써 61番개의 12海里 領海 宣布國이 되었고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의 문제도 附近水域의 國際的인 性格과 既存條約의 改廢에 의한 利害得失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조만간 이의 實施를 보게 될 것은 틀림없다.

I. 公海의 自由 및 그 制約

傳統的인 國際海洋秩序는 公海 領海의 兩分 위에 成立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領海와 公海의 관계에 있어서는 Grotius以來 「넓은 公海, 좁은 領海」가 國際法上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接續水域, 大陸棚, 漁業水域 등이 넓은 「公海」概念에 대한 制約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을 公海의 否定으로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公海概念, 公海의 自由 속의 概念으로서 說明하는 것이 傳統的 海洋法の 立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960代 初期까지의 傳統的인 海洋國際法은 公海의 自由, 公海使用의 自由를 中心으로 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國家도 公海上에서 航行의 自由, 漁業의 自由 등 使用의 自由를 방해받지 않는 동시에 어떠한 國家도 公海에 대하여 유효하게 그 主權을 主張할 수 없다는 소위 「公海의 自由原則」은 慣習國際法을 形成하고 있었다.

公海의 自由原則이 要請된 근거는 資本主義經濟가 점차 발전하여 海洋에 있어서의 特定國의 優越, 支配가 海洋秩序의 桎梏으로 化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古典的 自由主義理論의 海洋에의 適用이라고 볼 수 있으며 古典的 自由主義理論이 그러하듯이 公海自由의 밑바닥에 있는 自由競爭의 理論은 先進海洋國의 基本的 利益을 지탱하는 하나의 ideologie이기도 하였다.

歐羅巴諸國은 公海를 自由로이 航行하여 世界各地에 進出하고 아세아, 아프리카를 侵略하여 植民地로 하고 富와 財寶를 收奪하여 바다를 통해서 本國으로 가지고 갔다. 바다에서의 自由競爭에 이기는 者는 世界도 支配하였다. 이러한 「公海의 自由」原則이 반드시 國際社會의 一般利益을 代表하는 萬古不變의 絶對眞理는 아니라는 基本認識이 開發途上國의 立場임을 우리는 上記한 文脈에서 注意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에 公海 自由原則에 대하여 制限을 加하려고 한 움직임은 開發途上國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開發途上國은 公海의 自由를 制限하는 實効의 措置를 취할 實力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自由의 制限은 도리어 先進海洋國의 自由스러운, 그러나 一方的인 公海管轄權의 主張에서 비롯하였다. 美國은 1945年 「大陸棚에 관한 Truman宣言」 및 「保存水域에 관한 Truman宣言」을 發하여 前者에 의하여 水深 200m 以淺의 大陸棚에 屬하는 天然資源에 대한 自國의 管轄權을 主張함과 함께 後者에 의하여 同國의 領海에 接續하는 公海에 保存水域을 設定하여 이 水域에서의 漁業에 대한 美國의 獨自的 혹은 外國과 共同的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Truman宣言은 그 意

新海洋法の 問題点

圖는 어떠한 것이었던 간에 그것이 公海自由의 가장 큰 受惠者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 당시의 미국이 全世界에 比肩할 수 없는 唯一無二의 莫強한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實力의 保有者이었다는 점에서 美國에게는 結果的인 公海自由의 포기를 뜻 하느니 보다는 보다 큰 公海의 自由使用—비록 一方的이기는 하나—을 意味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自由의 極大化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反對의 公海不自由로의 轉換을 마련하는 契機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Truman宣言은 資源보호의 名目으로 沿岸國이 公海上에 發言權을 主張하는 口實을 주었고 이후 많은 국가가 大陸棚上에 主權을 主張하고 또는 漁業水域 등의 設定을 하게 되었다.

中國美에서는 1947년에 Chile, Peru가 領海를 200海里로 擴張한 것을 비롯해서 1950~60年代를 通하여 200海里水域을 設定하는 國家가 속출하였고 1952年 1月 18日 宣布된 韓國의 「大韓民國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宣言」도 이러한 文脈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은 두 말할 必要가 없다.

이리하여 海洋制度에 關한 累積된 慣行과 새로운 海洋秩序의 胎動을 不文의 慣習法이나 混亂된 無秩序에서 合意된 成文의 國際條約의 形式으로 編成하려고 하는 國際間的 努力이 있게 되었고 마침내 1958年 Geneva에서 第1次 UN海洋法會議의 開催를 보게 되었다.

2개월에 걸친 이 會議의 結果가 소위 Geneva海洋法 4條約 즉,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公海에 관한 協約」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保存에 관한 協約」 「大陸棚에 관한 協約」이다.

그러나 海洋制度 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領海의 幅 등에 관해서는 合意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年後인 1960년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第2次 UN海洋法會議를 開催하였으나 역시 成功하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領海幅 및 漁業水域 등에 관한 合意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전술한 4個國際條約은 그런 데로 海洋法の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國際海洋制度를 安定된 기반 위에 서게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잠정적인 安定은 곧 다음과 같은 事態發展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1) 1958年 Geneva 4個條約의 未解決의 問題는 漸次 緊急性을 더해갔고 또 그 條約도 全世界의 承認된 것이 못되었고 따라서 그 權威가 充分치 못하였다는 點

(2) 殖民地 獨立이 加速化하여 1958年에서 1967年 사이에 41個 新生國家가 UN에 加入하였으며 그들 사이의 紐帶感은 소위 '77 Group' 라는 第三世界를 形成하여 그후 이것이 114個國으로 成長하여 經濟的 社會的 側面에서 새로운 國際秩序를 摸索하게 되었다는 點

(3) 망강의 採取技術의 發達は 水深 200m 以遠의 開發可能한 大陸棚의 範圍를 無限히 擴大케 함으로써 深海海底 開發問題가 世界의 注目을 끌게 되었다는 點

(4) 遠洋漁業의 大型化, 冷凍, 凍조림의 船上設備의 擴大, 漁撈手段의 改良 등에 의한 生物資源의 亂獲 및 그에 따른 枯渴의 危險을 防止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다는 點

(5) 超強大國이 深海海底에 감시器具, 核裝置 및 기타 大量殺戮武器를 設置하는 技術을 發展시킨 點

(6) 沿岸을 航行하는 大型 tanker의 기름 排出이나 海上事故에 의한 海洋汚染에 各國의 關心이

漸高하였다는 점

(7) 大陸棚上の 富—특히 魚類와 石油—를 獨占 할려는 各國의 傾向.

이러한 事態發展은 海洋制度再檢討를 必然적인 것으로 만들었는데 1967年 總會 제22차 會期の 開會에 앞서서 Malta의 UN 常駐代表 Pardo 大使가 「現在の 國家管轄權 以遠의 海洋의 海底와 海床의 平和의 目的을 위한 保留 및 그 資源의 人類를 위한 利用에 관한 宣言과 條約」이라는 深海海底開發에 관한 새로운 議題의 追加를 要請하고 附屬 memorandum에서 海底 및 海床이 ‘人類의 共同的 財産’임을 宣稱할 것과 國際機關을 創設하여 深海海底를 管轄케 할 것을 提案하게 되었다.

이 Pardo 提案에 의하여 1967年 12月 總會는 ‘國家管轄權 以遠의 海底 및 海床의 平和的 利用을 研究하는 ad hoc委員會’(普通 海底委員會로 알려져 있다)를 設置하고 1969年 그 課業의 重大性에 비추어 海底委員會를 擴大하여 新海洋法會議의 準備委員會의 役割을 擔當케 하였다 이리하여 1973年 New York에서 開催된것이 바로 第3次 UN 海洋法 會議이다.

1958年の 第1次 海洋法會議가 東西의 冷戰에 의해서 支配되었다고 하면 第3次 海洋法會議는 南北의 貧富對決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對決은 各國의 相異한 政治的 經濟的 利害關係에 의하여 複雜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會期를 通하여 一貫된 두 개의 潮流를 보여 주고 있는 점에 우리는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沿岸國管轄權 擴大努力에서 보는 바와같이 可能的 한 많은 部分의 海洋을 自國에 確保하고자하는 國家主義(nationalism)의 傾向과 둘째는 深海底礦物資源을 위한 國際機關의 設置에서 보는 國際協力体制 즉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의 傾向이 그것이다.

沿岸國管轄權擴大努力과 國際協力体制는 확실히 하나의 矛盾概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管轄權擴大와 局限된 國際協力体制의 止揚위에 國家間 貧富隔差의 緩和, 南北對決의 解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現在의 第3次 海洋法會議 進展過程은 富益富, 貧益貧의 沿岸國管轄權擴大의 趨勢가 支配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經濟水域概念을 中心으로하여 海洋法會議 交涉草案에 나타난 이러한 現象을 살펴보고 그 性格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沿岸國 管轄權의 擴大

第3次 海洋法會議 第3會期, 第4會期, 第6會期에 각각 公表된 海洋法 非公式單一交涉草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改正單一交涉草案, 非公式合成交涉草案(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에는 領海의 幅, 대륙붕의 범위, 經濟水域의 內容에 관해서 거의 확정적인 國際間的 合意가 明記되어 있다.

그리고 그 內容은 沿岸國의 領域의 管轄權의 擴大強化의 方向이었다.

첫째, 領海의 폭은 「沿岸國에 의하여 公認된 大縮尺 海圖上에 표시된 海岸에 沿한 低潮線을 通常基線으로 하고 이 基線에서 측정하여 12海里까지를 領海로 할 수 있다」(非公式合成草案 3조 및 5조)고 하였으니 이것은 영해폭의 擴張이 강대국 海軍의 行動領域의 相對的 減少를 招來할 것을 우려한 美國등이 1958, 1960年の 두차례의 海洋法會議에서 그 以上을 절대로 容認하려고 하지 않았던 6海里의 2배이다.

新海洋法の 問題点

이에 따라서 接續水域—沿岸國의 領土 또는 領海내에서의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또는 衛生法規의 위반의 防止와 처벌에 필요한 통제를 行使할 수 있는 沿岸國 領海에 接續한 水域—도 領海幅을 測定하는 基線으로부터 24海里(33조)로 擴大되었으니 이것도 從前의 12海里의 2배의 擴張이다.

둘째, 大陸棚制度에 있어서도 領域的 要素가 強化되고 있다. 元來 1958年の「大陸棚에 관한 協約」에 있어서의 大陸棚에 관한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는 領域性이 짙은 것이었다.

비록 「大陸棚의 探査 및 그 天然資源의 開發은 航行, 漁業 또는 海洋生物資源의 保存에 대한 어떤 不當한 방해를 結果시키거나 또는 公表할 목적으로 行하는 基礎的인 海洋學上 또는 그밖의 科學上의 調査에 대해 어떤 방해를 結果시켜서는 안된다」(5조1항)고 하여 그 探査, 開發活動에 不當한 방해를 주지 않도록 엄중한 規制를 하고 있으나, 「大陸棚에 대해 沿岸國은 이를 探査하고 그 天然資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主權的 權利를 行使」(2조1항) 하는 바, 이 沿岸國의 權利는 「實効의 또는 觀念的占有 또는 어떤 明示의 선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2조3항) 즉 個別的인 正當化에 의하여 根據 주어진 것이 아닌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으로서 인정된다고 하고 또 沿岸國이 그 대륙봉을 探査하지 않으며 天然資源을 開發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國家도 沿岸國의 明示的인 同意없이 그러한 활동을 하거나 대륙봉에 관한 權利를 주장하지 못할」(2조2항) 뿐만 아니라 대륙봉에 관한 단순한 科學的 調査活動인 경우에도 沿岸國의 同意를 필요로 하게한 것(5조8항) 등은 대륙봉의 領域性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힘든 것이다.

第3次 UN海洋法會議의 非公式合成草案은 대륙봉의 범위를 대륙봉 margin까지의 沿岸國陸地의 自然연장의 全域에 걸친 海底區域의 海床 및 地下, 外緣이 200海里에 미달인 경우에는 200海里까지 (76조)—1958年の 「大陸棚에 관한 協約」에서는 수심 200m까지의 곳 또는 그 限度를 넘는 경우는 開發可能한 곳까지로하여 그 애매性으로 因해 論議가 紛紛하였다—自然延長說을 取함으로써 大륙봉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가 沿岸國陸地에 대한 主權의 연장으로서 당연 且 原初的인 權利이며 國際法上의 특별한 절차나 他國과의 合意 등의 條件을 필요로 하지 않는 權利임을 明白히 하였다.

요컨대 領海 및 接續水域, 대륙봉에 대해서 第3次 UN海洋法會議는 明確하게 沿岸國의 領域的 管轄權 확대 또는 強化의 方向을 견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公海의 3분의 1을 縮少하는 200海里의 排他的 經濟수역개념도 이러한 文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意見이다. 물론 同水域內에서도 보장되는 航海, 上空飛行 및 海底電線, 海底파이프 라인 부설의 自由, 航行 및 通信에 關連된 國際적으로 合法的인 기타의 海洋利用의 自由 등(58조)은 傳統적으로 公海에서 保障받아온 自由임에 틀림없는 것이나, 그것은 그것대로 排他的經濟수역을 특징짓는 요소는 필지언정 同水域을 公海가 아닌 또하나의 水域 즉, 領域性을 지닌 水域으로서의 法的地位를 占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못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非公式合成草案에 의하면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은 領海幅을 測定하는 基線에서 200海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領海를 넘고 또 이것에 인접하는 水域으로서 이 海洋法條約에서 設定되는 특별한 法制度에 服하는 水域(55, 57조)을 말한다. 그것은 領海도 아니고 公海도 아닌 第3의 水域이다.

이 水域안에서 沿岸國은

(a) 生物, 非生物을 불문하고 海床, 地下 및 上部水域의 天然資源을 探查, 開發, 保存, 管理하기 위한 主權의 權利 및 물, 潮流, 바람에 의한 energy의 生産 등의 당해 水域의 經濟적 開發과 探查를 위한 기타 活動 등에 관한 主權的 權利

(b) 다음에 관한 管轄權(jurisdiction)

i) 人工의 섬, 設備 및 構築物의 設置와 使用

ii) 海洋科學調查

iii) 海洋環境의 保存

(c) 本協約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56조)

특히 漁業에 있어서는 沿岸國은 同水域內의 ① 許容漁獲量을 결정하고 ② 資源量의 最大持續的 生産을 維持하는 조치를 取하여야 한다(61조).

또 沿岸國은 漁業資源의 最適利用을 促進하여야 하며 스스로 허용漁獲量의 全部를 採取할 能力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餘剩分에 관해서 他國의 入漁를 認定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內陸國의 開發參加權과 그 地域 開發途上國이 餘剩의 一部를 어획하는 필요성과 함께 그 水域에서 從來 傳統的으로 漁業을 行하여 온 國家의 經濟的 혼란을 最少로 할 것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62조).

沿岸國 및 그 관련海域內에서 附屬書1에 列擧된 高度回游性 魚種을 어획하는 기타 國家는 排他的 經濟水域 內外에서 이러한 魚種의 保存과 最適利用의 促進을 위하여 協力하여야 한다(64조).

溯河性魚種에 관해서는 그것이 起源하는 河川을 가진 國家가 주된 利益과 責任을 가지고 그 어획은 原則적으로 排他的 經濟水域內에서만 行하는데, 이 魚種을 어획하는 他國의 經濟的 혼란을 最少限으로 하도록 協力하여야 한다. (66조)

降域性 魚種이 그 生活期의 大部分을 보내는 水域을 가지는 沿岸國은 이 魚種의 관리에 責任이 있고 이 어종이 회유할 때에 당해 水域에의 移出入을 確保하는 것으로 하며 그 어획은 해당 沿岸國이 生物資源에 대하여 主權的 權利를 行使하는 水域에서만 行하여지며 漁獲이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行하여질 때에는 經濟水域에서의 어획에 관한 本協約의 規定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67조)

또 大陸棚의 定着性生物資源은 이 部の 規程이 適用되지 않으므로(68조) 沿岸國에게 허용어획량을 採捕할 能力이 없는 경우에도 他國의 入漁를 認定할 義務가 없다.

內陸國 및 地理的不利國이 인접연안국의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生物資源의 開發에 參加하는 權利는 沿岸國이 漁獲能力을 가지지 않는 餘剩分에 관해서만 認定된다. (69조, 70조)

이러한 規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水域의 內容은 매우 광범한 主權的 權利 및 管轄權을 沿岸國에게 認定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經濟水域規程 中에는 前述한 바 「沿岸國이든 內陸國이든 불문하고 모든 國家는 이 協約의 相關規定에 따라서 排他的 經濟水域에 있어서 航行, 上空飛行, 海底電線 및 海底파이프라인 부설의 自由와 船舶, 비행기, 海底電線 및 파이프라인 運用에 相關된 國際적으로 合法的인 기타의 海洋利用의 自由를 가진다」(58조)고 하고, 또 同水域內의 許容漁獲量中 餘剩部分에는 他國의 入漁를 許容하여야 한다(62조)는 등 水域內에서의 沿岸國의 權利남용을 制約하고 他國의 權利를 保障하려는 諸規程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新海洋法の 問題点

그러나 그럼에도不拘하고 同水域의 領域化를 指向하는 項目은 너무나 壓倒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經濟水域內에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광산물과 같은 非生物資源의 採掘活動이나 漁業活動 등의 生物資源의 採取活動과 같은 相互 異質的인 活動을 水域內活動으로 一括하여 이에 대한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를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同水域內에서 물, 潮流 바람에서 energy를 만들어내는 따위의 기타活動에까지도 포괄적으로 主權的權利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同水域의 領域性을 머리에 두지 않고는 理解하기 힘든 곳이다

둘째, 海洋의 科學的 調査, 海洋環境의 保全에 관한 沿岸國의 管轄권은 經濟水域의 天然資源의 保護의 一環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이 擴大된 沿岸國의 管轄권은 同水域內의 外國船에 대하여 各種의 規制와 管轄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人工의 섬, 設備, 構築物의 設置와 使用에 관한 管轄권도 同水域의 領域化의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經濟水域개념은 領域性의 要素를 強하게 가지고 있는 點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領域性은 특히 資源의인 面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資源의領域性의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論者中에는 沿岸國과의 近接性을 근거로 하여 資源指向的인 特定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操業活動에 대한 沿岸國의 自主的 決定權과 독점권을 認定하는 소위 機能的인 것에서부터 점차 經濟水域의 領域性개념으로 轉化하였음을 論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例컨대 종래의 해양관습법인 12海里 漁業水域은 漁業目的을 위한 기능적인 管轄권 또는 주권의 沿岸國에의 인정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적 개념에서 부터 점차 領域性向의 경제수역 개념으로 轉化하였다는 말이다.

筆者는 특정목적을 위한 기능적 管轄권 또는 주권의 累積이 수역의 영역화傾斜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 近接性에 근거를 둔 機能개념의 領域性 개념으로의 轉化는 第3次 UN 海洋法會議過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制約的인 것이 아니며, 단적으로 말하여 그것은 資源的 領域性 개념으로의 轉化이었다는 點을 指摘하여 둔다.

여하튼 경제수역개념은 이제 機能的 概念을 포괄적인 領域性으로 포섭을 함으로써 도리어 그 자체에서 거꾸로 기능적인 概念을 演繹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렀다. 200海里 漁業水域 개념은 바로 이러한 機能的 分化의 한 例라고 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현재 距岸 200海里에 무슨 名目으로든 排他的인 管轄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수는 57個國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200海里의 漁業水域의 개념은 1976年 4月 13日, 美國의 「1976年 漁業保存, 管理法」의 공포에 비롯해서 하나의 國際관행으로서 자신을 굳혔고 이제 諸國의 法的確信으로 昇化되어 새로운 국제관습법화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海里의 어업水域은 各國이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노력하고 있는 國際條約의 체결을 기다리지 않고 距岸 200海里 幅의 經濟水域 또는 어업水域을 설정하는 것에 주목」(소련의 200海里法 前文에서)하면서 「UN 海洋法會議의 結果로서 생기는 포괄적인 조약」(미국의 어업保存, 管理法 前文) 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조치로 발표된 것이므로 경제水域과 대립된 機能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수역개념의 일부로서 그 妥當性을 부여받고 있다. 또 실제의 각국의 어업水域規制는 前記한 UN 第3次 海洋法會議의 3個草案에서 거의 전세계각국의 concensus가 이루어진 200海里 경제수역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移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관습법화한 200海里 漁業水域은 經濟水域개념을 전제로 한 것인 면에서 經濟水域개념의 強化의 方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領域性的 經濟水域에 대립되는 機能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領域的 經濟水域의 機能的 分化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Ⅲ. 經濟水域의 法的 문제점

200海里 經濟水域이 資源의 領域性을 그 法的性格으로 한다고 할 때 그 資源的 領域性이라 함은 距岸 200海里의 海洋資源에 관하여 領土 또는 領海에 대한 主權的 權利와 같은 것이 인정된다는 말이며, 第3次 UN海洋法會議의 3개 草案에 나타난 경제수역에 관한 雜多한 규정이 내포하는 意味는 이러한 경제수역의 資源的 領域性에 着目할 때 비로소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資源의 領域性은 그것이 資源에 관한 領海的 性格의 강조라는 意味에서 公海, 領海, 兩分의 전통적인 해양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요컨대 그것은 자원에 관해서 領海의 성격에 錘의 무게를 더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海里 경제수역이 合成草案의 公海, 領海外에 第3의 水域으로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公海, 領海의 전통적인 양분 체제 속에 있는 水域이며, 장래의 領域化를 기약하는 과도적 水域인가, 또는 그 자신의 法原則을 設定하여 文字 그대로 海洋을 3分 하여 公海, 領海外의 第3의 水域 또는 法域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경제수역내에서의 航行, 上空비행, 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58조) 등 자유公海에서 인정되는 자유는 계속하여 경제수역의 포괄적 영역화 경향을 배제하여 도리어 경제수역의 본질적 요소를 형성할 可能性이 짙다.

이 문제에 대한 흥미있는 示唆을 주는 것은 國際海峽의 通航問題에 나타난 각국의 태도이다.

이 문제는 領海의 12海里擴大에 따른 國際海峽의 領海化를 해양強大國의 자유通航의 주장과 어떻게 妥協시키는가의 問題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英國案을 기초로 한 通過通航(transit passage)이라는 새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

즉 「公海 또는 排他的 경제수역의 일부분과 公海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타부분 사이에 있어서의 국제航行에 使用되는」海峽(37조)에 있어서 「모든 선박 및 항공기는 通過通航(transit passage)의 權利를 가지며 그 通航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通過通航이란 海峽을 계속 且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이 部의 규정에 따라서 航行 및 상공비행의 自由를 行使하는 것을 말한다」(38조)고 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은 국제해협이 해협國의 12해리의 領海속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모든 船舶, 航空機의 자유통항이 許容된다는 말이다. 換言하면 이 규정의 핵심은 특히 군함, 군용항공기, 핵장비선의 통항 또는 상공비행이 연안국의 사전통고 또는 허가의 규제, 잠수함의 海面航行의 의무화

新海洋法の 問題点

등의 無害通航(innocent passage) (19조 및 45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곳에 있다.

現在の 海洋戰略上 強大國 합선 및 비행기의 행동의 은밀성과 효과를, 일의 善惡은 별문제로 하고 해협 연안국의 안전만을 위해서 國際해협에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안국의 인식이, 海峽의 군사적 側面에 沈黙하여 자유통항의 別名이라고도 할 수 있는 通過通航을 인정함으로써 海洋法會議에 合意의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現世界の 軍事戰略面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力關係의 論理가 領海化한 國際해협에 적용되는 정도에 못지 않게 經濟水域에 적용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면에서도 經濟水域의 通航의 自由 등의 公海自由原則의 一部分은 資源的 領域性을 지닌 經濟水域의 포괄적인 領域化를 막아 그 本質的 要素로서 계속 남아있을 것을 豫測케 하는 것이다.

둘째, 經濟水域內의 國家協力の 문제가 經濟水域의 本質的 要素를 形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현재 200해리의 漁業水域에서 沿岸國이 他國의 參與없이 許容漁獲量을 決定하고 剩餘部分의 配分을 行하기는 하나 그런대로 雙務 또는 多邊條約에 의하여 漁業協力を 하고 있으며 이러한 漁業協力を 전혀 排除한 200海里 漁業水域概念은 現在 없다. 이러한 漁業協력이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認定下에 行하여지는 것이며 對等한 當事國間의 協力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에서 領域的인 領海概念線上에서 보아야 한다는 主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대로의 漁業協력이 行하여져 있고 國家에 따른 漁獲能力의 不均等, 合理的인 漁場管理知識의 普及 等を 遠因, 近因으로 하여 그것이 長期間 行하여질 展望이 짙은 現在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型의 漁業協力を 經濟水域의 本質的 要素로 보는것에 否定的이기만 한 것은 現實的이 아니다.

특히 이 問題는 經濟水域의 領域的인 確保가 實効性있게 實施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同水域內에서의 主權的 行使를 可能하게 하는 有効한 管轄權實施가 반드시 領海概念 또는 領域性的 屬性이 아니라고 反證할 수 있다. 즉 敵國에 一時 占領당한 領域이 主權의 有効한 實施가 없었다고 해서 곧 그 國家의 領域性을 喪失한다고 할 수는 없는 論理와 같다. 또 設使 現代 海洋技術面에서 管轄權의 有効한 實施가 不可能하다고 해도 將來의 科學技術은 이것을 可能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同水域內에 有効한 管轄權의 實施가 保障된다고 해도 그것은 同海域의 尠大性, 海洋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領海, 領土의 境界에 관한 문제와는 判異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 確實하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完全한 主權的 管轄權實施가 行하여 지지 않는 現象은 그것이 前述한 敵國에 의한 것이든 科學技術의 現代의 水準에 의한 것이든가를 불문하고 領域概念的 例外現象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例外現象이 普遍化될 때 그것은 바로 經濟水域의 本質的인 要素를 形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領土 또는 領海上의 그것과 相異한 實踐上의 諸문제를 提起할 것이며 域內의 漁業協力を 보다 現實的인 要請으로 만들기도 하고 公海自由的인 通航의 自由를 必然的인 것으로 하기도 할 것이며 그 외의 傳統的인 領域概念과 異質的인 實踐을 낳을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셋째, 200海里 經濟水域의 完全한 領域化를 國際秩序가 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00海里 經濟水域 등에 代表되는 沿岸國 管轄權 擴大現象은 人類의 共同財産으로서의 海洋資源의 많은 部分을 沿岸國의 支配下에 두는 것인데, 알려진 海底 石油 및 自然가스의 全部와 採取possible한 鑛物의 全部, 容易하게 採取가 possible한 망강괴의 大部分, 全世界 漁獲量의 85~95%가 沿岸國의 管轄下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200海里 經濟水域의 半以上은 美, 濠, Indonesia, New Zealand, Canada, 蘇, 日, Brazil, Mexico, Chile의 10個國이 차지하고 있으며 石油埋藏量의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나라도 美, 蘇, 英, Norway, 濠의 5個國임으로 200海里 經濟水域의 큰 受惠者는 大体로 이미 富國인 先進海洋國들이다.

또 150餘個國에 달하는 國家中 200海里經濟水域 設定에서 實質的인 惠澤을 別로 받지 못하는 內陸國이 30, 地理的 不利國이 105라고 하므로 200海里 經濟水域의 受惠國이 至極히 限定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第3次 海洋法會議가 南北의 對決을 그 軸으로 하고 있다고 함은 前述하였거니와 沿岸國, 管轄權 擴大現象은 貧富隔差의 解消는 커녕 相對的인 富益富, 貧益貧 現象을 極大化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新海洋法 制定을 通하여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希求하여 온 貧國의 所願과 正反對의 結果이며 그것은 또 現狀打破가 아닌 現狀固定化 方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經濟水域의 領域化의 限界性과 水域內國際協力の 必然性의 근거를 볼 수 있을 것이나 將來의 보다 成熟된 狀況下에서는 이러한 不公平 是正의 또하나의 海洋法會議開催를 占치는 論者도 있다. 특히 이러한 沿岸國 管轄權 擴大現象의 antithese(反對命題)라고 할 수 있는 新國際 經濟秩序를 指向하는 深海海底機構 創設의 努力의 表現은 매우 意味있는 것으로 보인다.

草案의 深海 海底는 國家管轄權 以遠의 海底 및 海床을 意味하는 것이며 10年前에 그렇게도 開發 途上國의 마음을 설레게 한 人類의 共同財産으로서는 아주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國際管理下에 있게 될 이 限定된 地域의 資源도 生物資源이 除外된 鑛物資源에 局限되며 鑛物資源—망강괴—開發 및 利用의 主役도 21世紀까지는 이미 富한 나라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망강괴 開發의 國際機構를 創設함으로써 다짐하는 國際協力体制의 樹立의 世界史的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收益을 通하여 貧富의 國家的 隔差를 解消하는 積極的이고 正面的인 方途를 提供한다는 면과 이러한 機構設立이 바로 有史以來 처음으로 新經濟秩序를 위한 全世界國家間의 共同事業의 始初라는 點에서 그러하다.

現在 深海海底資源의 開發方式, 開發條件, 深海海底에 관한 國際機構의 構成과 權限의 문제를 中心으로 하여 開發途上國과 海洋先進國이 對立하고 있으며 특히 國際機構에서 免許를 받아 私企業이 開發하는 方式을 主張하는 富國과 機構가 直接開發하는 方式을 主張하는 開發途上國의 主張이 맞서고 있는데 이 兩者를 綜合하여 機構의 直接開發과 私企業에 의한 開發 양쪽을 다 免許하는 並列方式에 대하여 現在 論議가 進行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하튼 이 문제를 다루는 第1委員會에서 先進海洋國과 第3世界의 戰線이 가장 明白히 그어져 있

新海洋法の 問題点

고 第3次 海洋法會議의 成敗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國際協力体制의 創設은 理念的으로 經濟水域概念의 領域化現象을 中途에 阻止하여 同水域内の 協力을 보다 現實的인 것으로 할 수 있는 契機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Ⅳ. 結 論

200海里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은 資源的 領域性으로 特徵지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과연 公海 領海兩分의 傳統的인 海洋法体制線上에서 領海의인 傾斜가 강하고 또 장래 領海化의 可能性이 매우 짙은 準領海的 制度로 規定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實質的인 第3의 水域 또는 法域으로서 그 自身의 制度的 法的인 內容을 充實化하여 名實共히 新海洋制度의 旗手로서 公海 및 領海와 더불어 海洋을 三分하여 鼎立之勢를 이룰 것인가는 今後의 歴史的 實踐속에 결정될 것 이라고 보는 것이나, 우리는 沿岸國 管轄權 擴大가 國家間의 富益富 貧益貧 現象을 極大化 함으로써 第3次 海洋法會議의 本來의 希望과 相馳되는 結果를 가져 온 事實을 注目하면서 深海底 國際機構創設 努力에 表明된 國際協力体制의 國際主義的 精神이 보다 普遍化될 것을 希求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 것이다.